

# 김천혁신도시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5.10.24.(금)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60-116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김천시 거주자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적용	공공택지	
10년	1년	없음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10.24.(금)	25.11.03.(월)	25.11.04.(화)	25.11.05.(수)	25.11.12.(수)	25.11.16.(일)~ 25.11.18.(화)	25.11.23.(일)~ 25.11.25.(화)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김천혁신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0.24.(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등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11.03.(월)	25.11.04.(화)	25.11.05.(수)	25.11.12.(수)	25.11.16.(일)~ 25.11.18.(화)	25.11.23.(일)~ 25.11.25.(화)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을곡동 1128)</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과거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1항제3호)	10년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김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발표일 (2025.11.12.)로 부터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 건축디자인과 -50779호(2025.10.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울곡동 1126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29층 3개동 총 349세대  
[특별공급 138세대(기관추천 18세대, 다자녀가구 34세대, 신혼부부 41세대, 노부모부양 11세대, 생애최초 3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486	01	084.9197A	84A	84.9197	23.5863	108.5060	54.1763	162.6823	39.8207	102	10	10	23	3	19	65	37	4
	02	084.8903B	84B	84.8903	24.1488	109.0391	54.1575	163.1966	39.8069	80	8	8	18	3	15	52	28	3
	03	113.8143A	113A	113.8143	31.0571	144.8714	72.6102	217.4816	53.3700	112	-	11	-	3	-	14	98	4
	04	113.7967B	113B	113.7967	31.4047	145.2014	72.5990	217.8004	53.3618	55	-	5	-	2	-	7	48	2
합 계										349	18	34	41	11	34	138	211	13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113A	113B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1	-	-	3
	장기복무 제대군인	2	1	-	-	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	-	3
	장애인	2	4	-	-	6
	중소기업 근로자	2	1	-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	8	11	5	34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18	-	-	4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3	3	2	11
생애최초 특별공급		19	15	-	-	34
합 계		65	52	14	7	13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VAT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동구분	층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계약시	2차 계약후 30일 이내	1회 2026.03.16	2회 2026.09.15	3회 2027.02.15	4회 2027.07.15	5회 2028.01.17	6회 2028.06.15
84A	102동 2호라인,	1층	1	159,118,000	238,882,000		398,000,000	10,000,000	2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19,400,000
		2층	3	159,118,000	244,882,000		404,000,000	10,000,000	3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103동 3,4,5호라 인	3~5층	12	159,118,000	256,882,000		416,000,000	10,000,000	3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41,600,000	124,800,000
		6~10층	20	159,118,000	270,882,000		430,000,000	10,000,000	3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11~28층	66	159,118,000	278,882,000		438,000,000	10,000,000	3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31,400,000
84B	103동 1호라인	1층	1	159,062,860	231,937,140		391,000,000	10,000,000	2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39,100,000	117,300,000
		2층	1	159,062,860	237,937,140		397,000,000	10,000,000	2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39,700,000	119,100,000
		3~5층	3	159,062,860	249,937,140		409,000,000	10,000,000	3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6~10층	5	159,062,860	263,937,140		423,000,000	10,000,000	3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126,900,000
		11~28층	18	159,062,860	272,937,140		432,000,000	10,000,000	3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43,200,000	129,600,000
	102동 1호라인, 103동 2호라인	1층	1	159,062,860	262,937,140		422,000,000	10,000,000	3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126,600,000
		2층	1	159,062,860	268,937,140		428,000,000	10,000,000	3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128,400,000
		3~5층	6	159,062,860	280,937,140		440,000,000	10,000,000	3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44,000,000	132,000,000
		6~10층	10	159,062,860	294,937,140		454,000,000	10,000,000	3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136,200,000
		11~28층	34	159,062,860	303,937,140		463,000,000	10,000,000	3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38,900,000
113A	101동 2,3호라인 , 102동 3,4호라인	1층	1	200,633,950	300,332,773	30,033,277	531,000,000	10,000,000	4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53,100,000	159,300,000
		2층	4	200,633,950	308,514,591	30,851,459	540,000,000	10,000,000	4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54,000,000	162,000,000
		3~5층	12	200,633,950	322,150,955	32,215,095	555,000,000	10,000,000	4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55,500,000	166,500,000
		6~10층	20	200,633,950	339,423,682	33,942,368	574,000,000	10,000,000	4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57,400,000	172,200,000
		11~29층	75	200,633,950	349,423,682	34,942,368	585,000,000	10,000,000	4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75,500,000
113B	101동 1,4호라인	2층	2	200,603,130	335,815,336	33,581,534	570,000,000	10,000,000	4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71,000,000
		3~5층	6	200,603,130	349,451,700	34,945,170	585,000,000	10,000,000	4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175,500,000
		6~10층	10	200,603,130	367,633,518	36,763,352	605,000,000	10,000,000	5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60,500,000	181,500,000
		11~29층	37	200,603,130	377,633,518	37,763,352	616,000,000	10,000,000	5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184,8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니며, 85㎡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 공통사항

청약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li> <li>청약자가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li> <li>신청자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li> <li>청약신청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li> </ul>
공급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li> <li>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계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li> <li>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li> <li>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li> </ul>
중도금 및 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대출수수료, 인지대 등 추가 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아파트 분양대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선납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함)</li> <li>공급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납부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li> <li>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대지지분에 대한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li> <li>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ul>
보증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li> <li>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사업시행자)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사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li> <li>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li> </ul>
당첨자 선정 및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등·호수는 주택형 내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li> <li>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li> <li>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사업지 주변을 직접 확인해야하고, 견본주택에 비치, 게시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사전고지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li> <li>본 표시재산의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li> <li>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세대단지, 단지모형, 견본주택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li> <li>본 아파트의 지번,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 조경시설물,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li> <li>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内外,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과 공사지연손해를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li> <li>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단,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 1/2씩 분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li> <li>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ul>

## 4

##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있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차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이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 colspan="2">처리방법</th></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 <td rowspan="3">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천시 및 경상북도 포함)</th><th>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포함)</th><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td><td>200만원</td><td>250만원</td><td>3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02m<sup>2</sup> 이하</td><td>300만원</td><td>400만원</td><td>600만원</td></tr> <tr> <td>전용면적 135m<sup>2</sup> 이하</td><td>400만원</td><td>700만원</td><td>1,000만원</td></tr> <tr> <td>모든면적</td><td>500만원</td><td>1,000만원</td><td>1,500만원</td></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천시 및 경상북도 포함)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포함)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 <sup>2</sup>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 <sup>2</sup>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m <sup>2</sup>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천시 및 경상북도 포함)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포함)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m <sup>2</sup>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 <sup>2</sup>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m <sup>2</sup>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4-1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대구지방보훈청 보훈복지팀</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li> <li>■ 장애인 : 경상북도청 장애인복지과, 대구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 4-2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li> </ul>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경상북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4-3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4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li> <li>■ ①소득구분</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

####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0.24. (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비고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ul> </li> <li>■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li> <li>■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li> </ul>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li> <li>*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li> </ul> </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li> <li>-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li> </ul>

####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34세대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ul> </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본 아파트는 전 세대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형으로 공급하여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불가함.)</li> <li>*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ul> </li> </ul> </li> <li>■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li> <li>**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ul> </li> </ul>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li> <li>■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td> </tr> </tbody> </table> </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방법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p>																																																												
	<p>■ 자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li> <li>*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li> <li>*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li> </ul> </li> </ul> <p>■ 소득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확인 시점</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 </thead> <tbody> <tr> <td>2025.10.24.(금)</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 </tbody> </table> <p>-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구분</th><th rowspan="2">비율</th><th colspan="6">소득금액</th></tr> <tr> <th>3인 이하</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r> </thead> <tbody> <tr> <td>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td><td>130% 이하</td><td>~9,366,906원</td><td>~11,151,514원</td><td>~11,740,362원</td><td>~12,653,012원</td><td>~13,565,661원</td><td>~14,478,311원</td></tr> <tr> <td>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td><td>130% 초과 160% 이하</td><td>9,366,907원~ 11,528,499원</td><td>11,151,515원~ 13,724,941원</td><td>11,740,363원~ 14,449,677원</td><td>12,653,013원~ 15,572,938원</td><td>13,565,662원~ 16,696,198원</td><td>14,478,312원~ 17,819,459원</td></tr> <tr> <td rowspan="3">추첨공급</td><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td><td>11,528,500원~</td><td>13,724,942원~</td><td>14,449,678원~</td><td>15,572,939원~</td><td>16,696,199원~</td><td>17,819,460원~</td></tr> <tr> <td rowspan="2">1인 가구</td><td>160% 이하</td><td>~11,528,499원</td><td>~13,724,941원</td><td>~14,449,677원</td><td>~15,572,938원</td><td>~16,696,198원</td><td>~17,819,459원</td></tr> <tr> <td>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td><td>11,528,500원~</td><td>13,724,942원~</td><td>14,449,678원~</td><td>15,572,939원~</td><td>16,696,199원~</td><td>17,819,460원~</td></tr> </tbody> </table> <p>※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p> <p>※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p> <p>※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p> <p>※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p> <p>※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p> <p>■ 자산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li> </ul>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0.24.(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10.24.(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총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비고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b>청약통장 자격요건</b>을 갖추어야 합니다.</li> </ul> <p>- 1순위</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b>6개월</b>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천시 및 경상북도 포함)</th> <th>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포함)</th> <th>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천시 및 경상북도 포함)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포함)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김천시 및 경상북도 포함)	그 밖의 광역시 (대구광역시 포함)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ul> </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거주자)</li> <li>■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li> </ul> </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85㎡ 초과</td> <td>-</td> <td>100%</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배우자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li> <li>-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li> </ul>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4)출입국사실증명원 (5)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사실증명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사실증명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li> <li>*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li> </ul> </li> </ul>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li> </ul>

## 6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b>본인 신청 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b>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b>		<table border="1"> <tr> <td style="text-align: center;"><b>인감증명 방식</b></td><td style="text-align: center;"><b>본인서명확인 방식</b></td></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tr> </table>	<b>인감증명 방식</b>	<b>본인서명확인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b>인감증명 방식</b>	<b>본인서명확인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li>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2025.11.12.(수)</li><li>■ 확인방법</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시 : 2025.11.23.(일) ~ 2025.11.25.(화) (10:00~16:00)</li></ul>
	1순위 2순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각 사용가능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경상북도 김천시 울곡동 1128)</li></ul>

- 당첨자 명단은 ‘청약홈Home’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 입주자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マイ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ul>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항)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li>-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ul>
당첨자발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li>- <b>조회기간</b> : 2025.11.12.(수) ~ 2025.11.21.(금) (10일간)</li><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li>-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li><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b>제공일시</b> : 2025.11.12.(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ul>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계약체결
특별 공급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5.11.12.(수)</li> <li>■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5.11.16.(일) ~ 2025.11.18.(화) (10:00~16:00)</li> <li>■ 장소 : 견본주택(경상북도 김천시 울곡동 1128)            * 당첨자 외 입장 불가(동반 1인 가능)            ※ 자격확인 서류 제출방법 및 예약관련 사항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별도 통보예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2025.11.23.(일) ~ 2025.11.25.(화) 3일간 (10:00~16:00)</li> <li>■ 장소 : 견본주택(경상북도 김천시 울곡동 1128)</li> </ul>
	1순위	*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기간 내 방문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li> <li>■ 서류 제출 일정 및 운영시간, 서류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li> <l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기한 내 미접수 시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li> </ul>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홈페이지(<https://김천혁신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첨참여 및 계약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0.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 동안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li> </ul>
공통서류	<input type="radio"/>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 인터넷 청약(<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한 경우 생략</li> <li>당사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li> </ul>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li> <li>※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li> </ul>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li> <li>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li> <li>※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li> <li>(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 '김천혁신 동일하이빌 파크레인'로 설정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li> </ul>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li> </ul>
	<input type="radio"/>		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li> </ul>
기관추천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li> </ul>
	<input type="radi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li> <li>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 인터넷 청약(<a href="https://www.applyhome.co.kr">https://www.applyhome.co.kr</a>)한 경우 생략</li> </ul>
	<input type="radio"/>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li> </ul> <p>※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p> <p>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p>
	<input type="radio"/>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li> </ul>
	<input type="radio"/>	다자녀가구 배점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접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li> </ul>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li>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li> </ul>
	<input type="radio"/>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자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li> <li>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p>※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p>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li> </ul>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견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li> </ul>	
	<input type="radi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li> </ul>			
	<input type="radio"/>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li> <li>아래 [표1]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li> </ul>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ul>	
	<input type="radio"/>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li> </ul>	
	<input type="radi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p>※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p>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견본주택에 비치</li> </ul>	
	<input type="radi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input type="radio"/>	부동산소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gt; 등기열람/발급&gt; 부동산&gt;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li> </ul>	
	<input type="radio"/>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li> </ul>	
	<input type="radio"/>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a href="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a>)</li> </ul>	
	<input type="radio"/>	부동산 자산보유 확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li> </ul>	
	<input type="radi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 자산가액으로 자격을 검증 받을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견본주택에 비치</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ul> </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당첨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li> </ul>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li> <li>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li> </ul>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사 견본주택에 비치(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li> </ul>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li> </ul> <p>※ 아래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p>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li> </ul>
	○		소득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li> <li>아래 [표1]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li> </ul> <p>※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p>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li> <li>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li> </ul>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li> <li>(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a href="http://www.iros.go.kr">www.iros.go.kr</a>)&gt; 등기열람/발급&gt; 부동산&gt;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li> </ul> <p>※ 아래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p>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input type="radio"/>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li> <li>※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li> <li>▪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a href="http://www.realtyprice.kr">www.realtyprice.kr</a>)</li> </ul>	
	<input type="radi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li>※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li> </ul>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li> </ul>	
	<input type="radio"/>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li> </ul>	
	<input type="radio"/>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input type="radio"/>	부동산 자산보유 확약서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자산가액으로 자격을 검증 받을 경우 (견본주택 비치)</li> </ul>	
	<input type="radi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li> </ul>	
	<input type="radio"/>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li> </ul>	
	<input type="radio"/>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li> </ul>	
	<input type="radio"/>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ul>	
	<input type="radio"/>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급신청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li> <li>※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li> <li>(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 '김천혁신 동일하이빌 파크레인'로 설정하여 발급)</li> </ul>	
	<input type="radio"/>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li> </ul>	
	<input type="radio"/>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li> <li>※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li> </ul>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가점제 청약자	<input type="radio"/>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자격확인 &gt; 청약통장 &gt; 순위확인서 발급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gt;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li> </ul>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일반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림)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상세"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 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 '김천혁신 동일하이빌 파크레인'로 설정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f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 이상 부양)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제외)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요양시설,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체류한 경우)인 경우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 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 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을 명시)	
부적격 통보 받은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신청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 '김천혁신 동일하이빌 파크레인'로 설정하여 발급)	
	○	위임장	청약신청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ul>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ul>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ul>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ul>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ul>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재표 원본(직인 날인) ④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li>▪ 등기소</li> </ul>
	신규사업자(공고일 이전)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공단</li> <li>▪ 세무서</li> </ul>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ul>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복지센터</li> </ul>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국민연금공단</li> </ul>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li> <li>▪ 세무서</li> </ul>
기타 (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li> <li>▪ 해당직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참고

##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 ②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③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 환급 및 "0"원일 경우) ※ 소득금액증명의 결정세액과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 확인 ④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원,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세무서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소득관련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분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①,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서울시ETAX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 2025.11.23.(일) ~ 2025.11.25.(화) 3일간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경상북도 김천시 울곡동 1128)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번호	예금주명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17-0030-4795-91	(주)한국토지신탁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101동 0101호 경우, 입금자명 '1010101홍길동' 기재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 대리 계약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 (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 '김천혁신 동일하이빌 파크레인'로 설정하여 발급) ※ 자격검증 서류와 함께 제출하 경우 생략 가능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구매금액 7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li> <li>■ 수입인지 구매금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중 분양계약자 부담금 75,000원</li> <li>■ 구매절차 : 홈페이지 접속 &gt; 회원가입 or 비회원 구매 &gt; 구매 &gt; 납부정보입력(인지세납부/부동산 등 소유권이전/75,000원/1건 &gt; 테스트출력 &gt; 결제(계좌이체 or 신용카드) &gt; 출력 ※ 오프라인 구매 시 : 은행 및 우체국 가능</li> </ul>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발급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임장(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단, 위임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장(또는 서명)</li> </ul>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9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li>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ol>

-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추후 별도 안내 예정)을 통해 응자 가능하나, 관련법률의 개정, 부동산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금융기관의 규제, 금융기관의 대출기준 변경, 금융기관 미확보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이 있을시 분양금액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 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금액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금(분양금액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고,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 시행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중도금 이자후불제 응자 등 판촉 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 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 개시일의 전일까지의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위탁자 등이 대납하기로 하며(단, 위탁자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위탁자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 변경(DTI, LTV, DSR 등)에 따른 금리인상, 중도금 대출 비율 축소 및 중도금 대출 불가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 시 지정한 중도금일정에 따라 수분양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계약자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마이너스 옵션

###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84A	9,800,000	980,000	8,820,000	-
84B	12,700,000	1,270,000	11,430,000	-
113A	11,700,000	1,170,000	10,530,000	-
113B	14,400,000	1,440,000	12,960,000	-

##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 확장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번호	예금주명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농협은행	317-0030-4795-91	(주)한국토지신탁

- 발코니 확장 계약금은 상기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확장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입금 시 확인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금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예) 101동 0101호 경우, 입금자명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발코니 확장비의 중도금, 잔금 납부일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지정된 납부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계약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착공 등의 문제로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고, 계약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자재조달 및 공사 여건상 정해진 기한 이후에는 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 위치, 시스템에어컨 위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조명설비, 우물천장, 스위치, 콘센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사용승인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및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등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탑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를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 안내

### (1)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선택	설치 수량	설치장소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선택1	2대	거실+침실1	LG전자	3,630,000	363,000	3,267,000
	선택2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160,000	616,000	5,544,000
84B	선택1	2대	거실+침실1	LG전자	3,630,000	363,000	3,267,000
	선택2	3대	거실+주방+침실1 <b>※주방특화 패키지 선택시 선택 가능</b>		4,840,000	484,000	4,356,000
	선택3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160,000	616,000	5,544,000
	선택4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b>※주방특화 패키지 선택시 선택 가능</b>		6,930,000	693,000	6,237,000
113A	선택1	2대	거실+침실1	LG전자	3,630,000	363,000	3,267,000
	선택2	3대	거실+주방+침실1		4,840,000	484,000	4,356,000
	선택3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160,000	616,000	5,544,000
	선택4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150,000	715,000	6,435,000
113B	선택1	2대	거실+침실1	LG전자	3,630,000	363,000	3,267,000
	선택2	3대	거실+주방+침실1		4,840,000	484,000	4,356,000
	선택3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160,000	616,000	5,544,000
	선택4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150,000	715,000	6,435,000

- 발코니 확장 미계약 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냉매배관은 거실과 침실1에만 설치·시공되며, 위치 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및 침실1) 미시공 등 기본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되며, 시스템 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립배관(거실 및 침실1)의 시공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전원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특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입주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세대 비획장 시 천장단열재 두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컨트롤러(리모컨)는 무선이며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또는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 시에는 공사비에 해당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발생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실외기(각 실내기 소요 용량 합산, 조합률을 고려하여 제조사가 보증한 범위 내에 적합한 사양으로 설치)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스프링클러·등기구·천정내 배선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실에 에어컨 냉매배관 등이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실이 협소해지고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홍보관 특성상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고, 모델도 상이합니다.

(2) 추가선택품목 (발코니확장시 선택가능)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 및 세부사항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단품옵션 (가구/ 마감재/ 가전)	현관 종문	전 주택형	3연동 슬라이딩+신발장 하부 조명	1,540,000	154,000	1,386,000
	침실2 불박이장	84A/84B	여닫이 불박이장	990,000	99,000	891,000
	침실2 드레스룸+ 침실3 드레스룸	113A	침실2, 침실3 드레스룸(가구도어+시스템 가구)	1,870,000	187,000	1,683,000
	침실 2 드레스룸+ 침실3 룸인룸 (공부방)	113B	침실2 드레스룸(가구도어+시스템가구) + 침실3 공부방(양방향 슬라이딩도어)	1,650,000	165,000	1,485,000
	광폭 강마루	84A/84B	광폭 마루 : 선택1) 비치 애쉬 선택2)시크화이트 오크	1,210,000	121,000	1,089,000
		113A/113B	광폭 마루 : 선택1) 러스틱 오크 선택2)시크화이트 오크	1,595,000	159,500	1,435,500
	천장형 복합환풍기 (공용욕실 + 부부욕실)	전 주택형	힘펠 3FHD-C150P	1,100,000	110,000	990,000
	일체형 비데	부부욕실	아메리칸стан다드 (C831000E C360000B)	880,000	88,000	792,000
	공용욕실	전 주택형		990,000	99,000	891,000
	전기쿡탑	전 주택형	파세코 PEC-BIH3471S	330,000	33,000	297,000

	(인덕션 하이브리드 3구)		<b>※84B/113A/113B 주방특화 패키지 선택시 선택 불가</b>				
욕실 특화	부부욕실 스타일업 특화 패키지	84A/84B	카운터형 세면대(엔지니어드스톤 에이프런 상판) + 하부장 +고급 수전 & 금구류 +고급 샤워 부스	1,980,000	198,000	1,782,000	
		113A/113B	카운터형 세면대(엔지니어드스톤 에이프런 상판) + 하부장+터치형 조명 거울 2개소 + 엔지니어드스톤 에이프런 욕조 + 상부 수납장 + 고급 수전 & 금구류 +고급 샤워 부스	3,300,000	330,000	2,970,000	
조명 특화 (유상추가)	디자인 조명 특화 패키지	84A/84B	현관 +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2/3 <b>※주방특화 패키지 선택시 선택 가능</b>	4,730,000	473,000	4,257,000	
		113A/113B	현관 + 거실 + 주방 + 복도 + 침실1/2/3 <b>※주방특화 패키지 선택시 선택 가능</b>	5,885,000	588,500	5,296,500	
디자인월 특화 (유상추가)	선택1 디자인 판넬	84A/84B	거실 아트월+복도 디자인 판넬 옵션 <b>※주방 패키지 선택시 적용가능</b>	3,300,000	330,000	2,970,000	
		113A/113B		4,785,000	478,500	4,306,500	
	선택2 디자인판넬+ 히든도어	84A/84B	거실 아트월+복도 디자인 판넬 옵션+히든도어 4짝 <b>※주방 패키지 선택시 적용가능</b>	8,470,000	847,000	7,623,000	
		113A/113B		9,955,000	995,500	8,959,500	
주방 특화	주방특화 패키지	84A	상부 수동형 플랩장+광폭 서립형 벽붙이 아일랜드+ 프리미엄 엔지니어드 스톤 업그레이드+기본수납장+주방/복도 팬트리(시스템선반 제외)	5,500,000	550,000	4,950,000	
		84B	상부 수동형 유리 플랩장+광폭 대면형 아일랜드+ 프리미엄 엔지니어드 스톤 업그레이드+독립형 후드+전기쿡탑+기본수납장+ 주방팬트리(시스템선반 제외)	5,280,000	528,000	4,752,000	
		113A	상부 수동형 플랩장+ 광폭 양면서랍 순환형 아일랜드+ 프리미엄 엔지니어드 스톤 업그레이드+독립형 후드+전기쿡탑+키큰장+ 복도팬트리(시스템선반 제외)+멀티룸(가구 제외)	6,270,000	627,000	5,643,000	
		113B		6,490,000	649,000	5,841,000	
	유상 추가	주방/복도 수납 특화	84A	시스템 선반 (주방/복도 팬트리) <b>※주방특화 패키지 선택시 선택 가능</b>	1,210,000	121,000	1,089,000
		주방수납 특화	84B	시스템 선반 (주방 팬트리) <b>※주방특화 패키지 선택시 선택 가능</b>	550,000	55,000	495,000
		복도수납+ 멀티룸 특화	113A	시스템 선반 (복도 팬트리) + 멀티룸 특화가구 <b>※주방특화 패키지 선택시 선택 가능</b>	3,740,000	374,000	3,366,000
			113B		4,180,000	418,000	3,762,000
	키친핏 냉장고장 특화	주방 홈바장 업그레이드	84A	홈바장 (엔지니어드 상판/벽+조명형 유리 상부장+키큰장) <b>※주방특화 패키지 선택시 선택 가능</b>	1,100,000	110,000	990,000
			84B	홈바장 (엔지니어드 상판/벽+조명형 유리 상부장+대형 키큰장) <b>※주방특화 패키지 선택시 선택 가능</b>	1,320,000	132,000	1,188,000
		84A	키친핏 냉장고장 + 5단 인출식 시스템서랍장	990,000	99,000	891,000	
			84B	1,100,000	110,000	990,000	
		113A/113B	키친핏 냉장고장 + 유리도어 홈바장	2,090,000	209,000	1,881,000	

(3)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 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명	납부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약금	계약시	10%	농협은행	317-0030-4794-51
잔금	입주시	90%		(주)한국토지신탁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상기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치 않습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등·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0101호 경우, 입금자명을 '101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추가선택품목의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상기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제공되는 공급계약서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4)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성능개선,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 시공상황 등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금액은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발코니확장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품목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일정은 추후 통보)
- 추가선택품목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확장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선택품목 설치 위치의 단위세대 마감재의 변경 및 미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미시공 설치 및 마감재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어니 확인 바라며,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제품사양 및 판매가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동주택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된 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제3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추가선택품목의 공급)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및 블박이 가전제품에 대해 입주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유형 및 가격이 서로 다른 복수의 제품을 제시하여야 하나, 본 아파트는 단일제품을 제공하여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가구 및 도어의 손잡이, 하드웨어, 레일, 엑세서리 등의 디테일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본으로 설치되는 수납공간이 미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일반가구, 빌트인 제품 등이 접하는 뒷면, 측면 및 바닥, 천장에는 바닥재, 벽지, 천장지,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설계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형별로 형태 및 사이즈, 내부 구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릅니다.
- 일부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마감재 설치에 따라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일부 품목이 전시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된 실 명칭은 설계변경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견본주택에서 해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이라도 호수별 좌우 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도어 개폐 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는 냉매 배관·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이를 질 유입에 유의해야 합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를 선택하면 기본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복합환풍기에 포함)
- 욕실 복합환풍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하고 인접 실내로 소음·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리모컨은 1대당 1개 제공됩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시공 여건(천장 내부 설비·등기구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환풍기 선택은 공용욕실과 부부욕실 개별 선택이 불가하며 셋트구성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 인덕션 선택 시 기본 제공품목인 가스쿡탑은 미설치·미제공 됩니다.
- 상기 산정된 금액은 기본품목의 미설치·미제공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선택품목설치로 증가된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84B/113A/113B 탑입의 주방 패키지 유상품목 선택 시 인덕션은 옵션에 포함된 품목이므로 인덕션 단품 추가선택은 불가합니다.
- 인덕션 선택 여부와 무관하게 가스배관·차단기는 기준 위치에 설치됩니다. 단, 84B/113A/113B 탑입의 주방패키지 옵션 선택 시 가스배관 차단기의 위치는 옵션 가구 설치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B/113A/113B 탑입의 주방 패키지 유상품목 선택 시 독립형 후드가 옵션에 포함된 품목이므로 기본 제공되는 벽부타입의 침니형 후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오븐의 경우 설치 위치가 유상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 탑입 기본 확장형의 경우 침실3의 불박이장이 기본 제공되며 침실2, 침실3 특화 옵션 선택 시 113타입의 경우 침실3의 장은 기본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 옵션 금액 산정 시 차감 정산됩니다.
- 냉장고장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기본 확장형 선택시와 주방 패키지 옵션 선택시의 가구 사이즈와 설치 위치가 레이아웃 특성상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특화 및 알파룸특화는 아파트 구조의 특성상 단품 구성이 불가하여 패키지로 구성하였으니 주택전시관 내의 옵션 안내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유상추가 품목은 주방 특화 패키지 유상옵션 선택 시에만 추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 조명특화 선택 시 제공되는 거실, 주방, 침실1,2,3의 디밍 제어시스템은 입주 후 조명·스위치 교체 시 기능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명특화 선택 시 거실 직부등이 설치되지 않아 중앙 부위의 평균 조도가 낮아 어둡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 조명특화 선택 시 거실 조명제어장치(릴레이)는 천장 내부에 설치되며, 유지보수 점검구가 현관 팬트리 등에 설치됩니다.
- 실별 온도조절기, 조명 스위치, 콘센트 등은 옵션선택에 따라 위치와 수량, 사양이 변경되고, 통합설치될 수 있습니다.
- 마루유상옵션 선택시 선택1)은 모델하우스건립타입에 설치, 선택2)는 모델하우스에 샘플 비치 하였으니 확인 후 유상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선택품목입니다.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마루, 현관 바닥타일, 현관 디딤판 및 굽도리(인조석), 걸레받이, 재료분리대, 욕실/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실타일(타일붙임물탈포함)	수공간(욕실, 발코니) 바닥방수 및 배수 슬리브, 바닥난방, 시멘트 물탈(난방배관시공부위만해당)
2) 벽	벽지(초배포함) 및 벽체마감 일체, 아트월, 주방벽타일/인조석(타일 붙임 물탈포함),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실 도장, 걸레받이	경량벽체,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노출부 거푸집자국제거)
3) 천장	천장지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대피실 도장, 천장/ 우물천장물딩 및 마감재	천장틀위 석고보드, 콘크리트면처리(해당부위 노출부 거푸집자국제거)

4) 일반가구	현관 신발장 및 펜트리문(해당타입), 화장대(상판인조석 포함), 복도장/ 선반, 수납선반 및 악세서리일체	미설치
5) 주방	주방/ 식당 및 다용도실 가구일체(상판, 씽크볼 및 악세서리 일체, 선반), 벽타일/ 인조석, 주방가전류(가스쿡탑, 렌지후드), 수전류, 가구조명	천장부 소방관련기본시설, 주방배기덕트, 설비배관(급, 배수, 난방), 정보통신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
6) 욕실	콘센트, 위생기구(양변기, 욕조, 세면대), 수전류, 액세서리류, 욕실환풍기, 벽/바닥 타일, 천장재, 인조석, 재료분리대, 욕실장, 샤워부스, 욕조하부틀, 코킹	방수 및 조적위 바탕처리, 설비배관(급수, 급탕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배관배선)
7) 창호	목창호 문틀/ 문짝/ 문선/ 손잡이 및 경첩(하드웨어일체)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디지털 도어락, 다용도실 도어, 실외기실도어/루버
8) 조명기구	매립 및 부착형 조명기구일체	배관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월패드
9) 옵션품목	선택하는 옵션품목 일체 포함	미설치
10) 기타	수전류(세탁수전, 발코니, 욕실, 주방 수전등)	미설치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은 기본형(비획장형)기준이며, 상기 품목들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구분	84A	84B	113A	113B
마이너스 옵션 금액	26,316,000	26,316,000	33,101,000	33,101,000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확장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 및 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자재수급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의거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통신,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등 기타 기 시공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소방관련시설, 단열, 방수, 미장, 창호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전기, 설비공사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그밖에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은 제외 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의 시공에 따라 발생하는 하자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발코니 비획장 기본형세대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발코니 비획장 기본형세대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닥재의 경우 내부 분합문(PVC내부창호)이 당초 계획된 자재인 마루판을 기준으로 설치되어 타자재(대리석등)의 시공이 어려울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 알선이 불가능 할 시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에 맞추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기본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11

## 단지여건 및 유의사항 등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입주예정일 : 2028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이하의 주택으로 입주지정기간을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잔금원납·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맘스스테이션, 경비실, 주민공동시설(골프연습장, 독서실,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멀티라운지, 선큰, 맘스카페),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등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을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 내진 성능 및 능력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및 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등급

#### 내진등급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임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m 이상	지하1층 : 2.7m 이상 지하2층 : 2.3m 이상	남측 주출입구 : 2.7m 이상

- 지하주차장 차로의 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이 불가하므로 견본주택에서 설계도, 모형도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하자판정 기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 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 바닥재, 타일, 판넬, 상판, 가구재 등의 교체가 진행될 경우 시공 시차에 따른 색상, 질감, 문양, 이음매, 나누기 위치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
|----|--|
| 공통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동주택의 명칭(김천혁신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공동주택) 및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돋기 위한 등·호수의 표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li>•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li>•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li>•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li><li>•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li><li>•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li>•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분양계약 이후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간에 전용면적 변경 시에도 상호간의 대지지분 증감은 없습니다.</li><li>•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시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li><li>• 본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li><li>•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은 지급하지 않습니다.</li><li>•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li><li>•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li>•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li>•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된 관리주체에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li>•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li>•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li><li>•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li><li>•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li><li>• 대한민국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가 분양을 받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외국환 거래법」、「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허가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본인의 책임으로 확인 및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li>• 「주택법」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li><li>• 본 아파트의 공사 도중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설계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추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li>•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는 추후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li>• 견본주택(홈페이지), 광고 홍보인쇄물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VR, CG 및 모형,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청약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접수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내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41호, 2016.03.17.)로 승인된 경북김천 혁신도시 개발사업 3단계(최종) 준공에 따릅니다.</li> <li>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 조경 공간(포장패턴, 식재, 파고라, 시설물 등), 단지 내/외 도로 및 시설물 (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가로수, 기타 식재 및 시설물 등)은 실시공시 인허가 관청 협의나 공사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평면, 입면, 마감재 등) 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li> </ul>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후 필요할 경우 현장여건, 시공상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정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 따라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의 등표시, 동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당 사업은 2022년 건축심의를 신청한 사업으로, 단위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벽체의 단열기준은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018.09.01)'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li> <li>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 내부 및 외부 공용부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인·허가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li> <li>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의 기초 및 지하, 지상층 구조와 형식, 규격, 수량 등은 굴토 후 지반충상태 및 지내력시험, 최적화 설계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당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8에 의거, 중심상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음을 인지하였으며, 해당 면적 비율 및 용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분양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흥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분양대상물의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이 삽입된 분양 관련 각종 홍보물(리플렛, 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홍보물 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 집기 등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분양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교육시설,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개발주체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저자 등을 실제 시공시 입주자 등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VR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예정)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각종 광고 및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배치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설계도서와 모형, CG 등 분양광고물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시공은 설계도서(최종 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시공됩니다.</li> <li>단지 모형에 표현된 단지 주변은 현황과 다를 수 있으며, 계약전 사업부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현황(혐오시설유무, 도로, 기반시설,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 유발요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주변시설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li> <li>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li> <li>분양 홍보물(CG)의 사업부지 외의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은 형태, 층수,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으니 필히 해당 개발주체에 문의 확인 바랍니다.</li> <li>단지 주변의 개발계획 및 공사 진척사항에 따라 주변의 "도로, 공원등"의 개설 시기가 분양자료(모형,CG등)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점 확인바랍니다.</li> <li>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li> </ul>

외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 (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용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101동, 102동, 103동 주동 일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모형도를 통해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 시 위치, 규격, 형식, 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아파트 측벽의 특화 및 마감계획은 인허가 및 현장시공여건,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이 제한되거나 위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li> <li>옥상 지붕층에는 소방관계법령 및 심의결과에 따라서 인명구조공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저층부 및 필로티 내외부 벽체는 석재 또는 판넬, 석재뿔칠, 석재미장, 그래픽도장 등으로 최종 설계변경 도면에 따라서 시공될 예정이며,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주출입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출입구 디자인 계획(차로폭원, 식재, 레벨, 시설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단지내부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분양안내문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li> <li>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li> <li>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li> <li>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지붕형태는 평지붕이고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됩니다.</li> <li>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향,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피해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li> <li>단지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 · 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놀이시설물, 조경시설물 등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 토심, 마운딩 규격, 관수설비 등의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li> <li>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동 옥상 장식탑은 시공 현장 여건에 따라 형태가 조정되고, 기둥 및 벽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li> <li>주동 필로티가 설치된 상부세대는 입주민의 통행 등으로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103동 전면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103동 종층(20층)이하세대 입주민들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홍보관 내 현장설명, 단지모형, 설계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지상 주민공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인근 저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각동 옥탑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집열판이 설치되며, 본공사시 위치, 수량, 높이, 집열판 각도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조망침해, 빛공해, 풍절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환기탑(DA), 쓰레기 보관소, 자전거보관대는 본공사 과정에서 일부 사양, 디자인, 수량, 위치는 조정될 수도 있으며, 일부동의 인접하여 설치된 경우 조망, 냄새 및 소음 등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필로티에 설치가 가능한 공간에 우선 설치됩니다.</li> <li>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여건상 비상차량 및 쓰레기이송차량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상이합니다.</li> <li>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점검 등)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옥외 운동시설, 파고라, 휴게의자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음식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저층 세대는 지상 소방차, 음식물쓰레기수거차, 쓰레기수거차 이동동선, 소방차 전용주차구획, 및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 음식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 · 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에 CCTV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아파트 단지 내 차량출입을 통제하며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하여 입·출차 정보를 세대 내에 통보할 수 있는 차량출입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소방차 정차 및 활동공간,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잔디, 초화류, 관목외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인접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장애인 및 노약자 편의시설로 주민공동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 각 동 출입구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이 계획됩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야간경관용 조명, 통신안테나, 사인물,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용부 전기로 사용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태양광발전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배치 등을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됩니다.
- 단지 내 주동 제연방식은 승강로를 이용하는 승강로 가압방식이 적용됩니다. (엘리베이터 훌에는 별도 스모크타워가 설치되지 않고, 급기그릴이 설치되며 일부세대 현관문에는 차압감지관이 설치됨.)
- 102동 하부 지하층에는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기계실로 인하여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02동, 103동 인근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으니, 계약 전 단지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전면에는 상가용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주거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서로 인접 배치되어 103동 입주자들은 주거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지도 상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지도 상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 균린생활시설·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설계되며, 세대 내부의 벽체는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 조적등으로 시공됩니다. 실간소음 및 층간소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등급은 내진I등급입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지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및 사업부지의 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쌓기, 비탈면,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주출입구, 부출입구, 보행자 통로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어 외부인의 보도통행 제한이 불가하고, 단지내 보도 일부는 공공보행로로 이용됩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창호의 개구부 규격이 작고, 유리난간설치로 인해 이삿짐용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대형 가전, 가구, 피아노 등의 설치에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므로 이사, 이전설치 및 구매설치 시 세대반입, 반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균린생활시설 및 단지 내 각종 시설물의 배치에 따라 특정 세대는 일조권·조망권·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주차장 차량의 진출입에 따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소음, 분진, 바람의 영향, 냄새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시설 사용으로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동의 일부 라인에는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 등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은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추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악취, 분진, 해충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 중계장치는 지하1층 전기실(주거용)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 출입구는 주변 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탑층과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전자파 영향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는 옥상에 설치된 각종 구조물에 의한 바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과 달리 결로방지를 위해 다용도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발코니 사용면적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부에 금속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는 경우, 인근 세대에 반사로 인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우수의 원활한 배출을 위한 하수관로가 인근도로 지하에 추가 매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관로에 대한 행정행위(점용신청 등) 및 점용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소음, 놀이터와 운동시설 소음, 쓰레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악취, 분진, 해충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일조권 관련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본 사업지는 수인한도 및 일조시간 확보 법적 대상이 아닌바 별도의 하자·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동절기 등 계절시간대에 따라 일부 세대의 거실 및 침실 등에서 일조 시간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각 동별, 세대별 일조 및 채광여건 등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3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소음, 시야간섭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계획승인 조건사항(p10)에 따라 공공도로(사업부지 내 인도)의 준공 후 관리주체(입주자 대표회의)는 공공도로의 사용권한이 김천시에 있음을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준공 시 건물 관리규약에 '공공의 통행공가으로써 지장을 및 적치물로 인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상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 공공도로(사업부지 내 인도)에 도로 파손으로 인한 민원 처리 및 유지·관리는(주체 및 비용) 준공 후 및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와 외부의 높이차로 인하여 보행자 단지 진입을 위한 외부계단 및 경사로가 설치되며 외부계단 및 경사로의 위치, 형태 등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북측 인접대지(율곡동 1125)와 높이차 및 주변보차도, 대지와의 높이차로 인하여 대지경계 및 내부에 투시형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난간의 설치구간, 위치, 형태, 재질 등을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지환경

- 본 사업지 서측에 유치권 행사 건물이 위치하여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 남동측에 변전소가 위치하며 단지 외부에 분묘, 축사, 발전소, 쓰레기처리장, 위탁시설 등의 유해시설이 존재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 남측에 김천구미역(KTX, SRT 등)이 있어 소음,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녹색건축 예비인증에 따른 소음측정 및 예측평가 결과 실외소음도 기준(65dB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추후 계약(예정)자는 사업주체·위탁자·시공사에게 방음벽 설치 등 요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인근 지역(김천시 율곡동 1129 등)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 여건 시설 미비, 공사 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혐오시설, 냄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에 의한 차량 및 보행자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로등, 야간조명, 옥탑 장식물, 경관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기반시설(가로수, 도로, 공원, 녹지 등)은 시공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므로,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열람·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지는 혁신도시 내 상업지역에 인접하여 의료시설, 영화관 등 편의시설과 근접하여 있음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b>학교관련 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사업지 공동주택의 경우, 초등학교는 농소초등학교로 배치될 예정이며, 중학교는 울곡중학교, 운남중학교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단,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령인구 감소 및 학교 유휴교실 발생 여부에 따라 학구 조정할 수 있음.</li> <li>학생 배치는 교육지원청 의견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고등학교 배치의 경우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지원과 소관이며,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본 단지는 입주민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해 입주 후 일정 기간 인근 농소초등학교로의 통학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단, 본 서비스는 사업주체의 부가적 편의제공으로 분양계약의 조건이 아니며, 구체적인 운행기간·노선·시간 등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김천교육지원청의 협의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해당 결정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입주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운영은 사업주체가 정한 예산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운영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기타커뮤니티시설(실내골프연습장 등)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됩니다.</li> <li>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주민공동시설 및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한 유지·보수·관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li> <li>부대시설(관리사무실, 단지내 도로, 자전거주차, 조경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소방시설, 비상급수시설 등)은 아파트 입주자가 공유하며,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인수 전까지는 사업주체 또는 위탁사가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대별로 부과되며, 이후 운영·관리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합니다.</li> <li>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li> <li>주민공동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되며 공용홀은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일부 가능합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실내구획, 입면 디자인,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홍보 동영상의 표현된 시설물(운동기구, 타격 스크린 장비 등등)이나 전시용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표현한 사항이므로 홍보영상 및 투시도의 설치 수량이나 브랜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외부에는 냉난방기의 실외기 설치로 인해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실외기설치장소와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외부에는 외벽체의 환기 및 배기를 위한 마감캡이 설치되어 카탈로그 등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천장에 유지보수를 위해 천정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li> <li>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공공장소인 휴게공간,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채광창, 쓰레기 분리수거장, 실외기, 자전거보관대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 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조망·환경·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위치를 명확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li> <li>보안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 위치·규모·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설치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실내골프연습장, 도서관 등 및 부속동(경로당, 어린이집 등)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li> <li>커뮤니티 부대시설에 대한 홍보 동영상의 표현된 시설물(운동기구, 타격 스크린 장비 등등)이나 디피 용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표현한 사항이므로 홍보영상 및 투시도의 설치 수량이나 브랜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 평지봉층은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소유로 단지 내 입주민이 활용할 수 없습니다.</li> <li>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내부 시설물(가구 및 집기류)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경로당' 주방가구는 설치되고, '맘스카페,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독서실, 멀티라운지, 스터디룸'에는 이동식 가구가 설치됩니다. 도서와 각종집기는 미설치되며, 설치되는 가구의 규격과 구성디자인, 색상, 사양, 수량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지상 또는 지하, 건물지붕 등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미관성능이 저하되고, 소음 및 진동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등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b>부대복리 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b>	

<b>기계/전기 설비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천정 및 벽체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li> <li>기계실 및 발전기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근 세대는 관련 설계도서 (지하 주차장 평면도) 및 상담을 통하여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및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과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의 공용부 천정과 벽체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및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부력 방지를 위해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되는 공용 전기세 등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 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단지는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며,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합니다.</li> <li>지하주차장·필로티·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li> <li>공용부 조명(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의 유지·보수·관리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li> <li>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 및 지하시설을 환기를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헬름, D/A)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소음·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제연헬름 설치로 인접 세대에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엘리베이터 인접 세대는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펌프실 등 기계실 인접 세대는 장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기계실·저수조실·주차장 등의 층고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전체 높이는 공사 여건 및 시공 방법 등에 따라 피난층 및 옥상 조형물 공법 변경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각종 공용부, 엘리베이터 홀, 복도, 지하주차장 천장부와 벽면은 기계배관,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미관성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li> </ul>
<b>지하주차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하 PIT층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으로 바닥, 천장, 벽에는 마감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영향으로 누수와 물고임의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과 지하부분 계단실 및 홀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li> <li>지하1층 근생용 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 간의 연결통로는 평상시 방화셔터로 차단되어 있으며 화재 등 비상시 개방되어 피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의 구조는 부속동 활용성 및 하자 예방을 위하여 위치, 면적, 층별 층고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주차장은 아파트(579대) 및 근린생활시설(57대)을 포함하여 총 636대(경차, 일반형, 확장형,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 규모로 지하 1층~지하 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입주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구조상 주차구획은 기둥, 소화전, 설비배관 및 벽등으로 인해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 공간의 구획·높이·면적, 비내력벽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아파트 지하층 PIT 공간은 지반 현황에 따라 바닥 레벨, 평면 및 구조 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소방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입주자전용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 30기(급속 6기, 완속 24기)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충전위치와 충전시스템 사양, 건축마감, 설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공동주택용 1개소, 근린생활시설용 1개소, 총 2개소입니다.</li> <li>지하주차장 진출입구(공동주택용) 지하1층 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 높이는 2.7m로 소형 택배차는 진입 가능하나 트럭, 대형차, 대형 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지하2층 주차장 주행 유효 높이는 2.3m)</li> <li>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용도별·동별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정주차 운영·통제는 관리주체의 책무입니다.</li> <li>지하주차장과 공용부 통로,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 공간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매연 등으로 공기질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및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li> <li>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 통제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은 외부에서 비·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li> <li>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통로 폭·출입문 크기 등 구조적 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캐노피의 형태·마감재·색채 등은 사업승인 변경 또는 동선·기능·성능 개선을 위해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교차로가 형성되어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간섭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li> <li>동별 이용 상황에 따라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 주차면 부족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민원 제기는 불가합니다.</li> </ul>

-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및 전시품목 주요사항

-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 보안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분양승인 신청서류 기준)과 전시품(조명, 가구, 그림, 장식물, 각종 소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과 전시용 전원설비 등은 설치되지 않고 분양승인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부대시설, 커뮤니티시설 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마감재는 추가선택품목 및 패키지 옵션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 마감재로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서류(평면도, 시방서 등)가 비치되어 있으며,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철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일정기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외벽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 품질·품귀·생산중단·제조회사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마감자재(예: 타일 등)는 자재 특성상 본 공사 시 일정한 무늬·색상 공급이 어려우며, 품질 판단은 KS 기준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등은 상황에 따라 타입·위치·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스위치·콘센트 등은 본 공사 시 형태·위치·수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 추가선택품목 적용 시 전기 배선기구·설비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입구 문틀은 전시용 프레임이 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일반 철재 현관문틀을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는 현관외부 엘리베이터 훌, 계단, PD 등의 상태와 배관·배수구·일반 환풍기 등의 위치는 계약 전 분양홍보관에 비치된 평면도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본 공사 시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세대의 실제 거실, 침실의 기본 천장고는 2.3m 입니다.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전시조명,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책상 및 의자, 식탁 및 의자, 소파 및 테이블, 화장대 의자 등 포함), 백 패널 및 장식물, 그림,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 밥솥, 다용도실 용품, 토스터, 커피머신, 의류관리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배관·배선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이동식 가구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대지 현황·설비·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 연출용 시공 부분은 전시용 자재 및 조명, 배관·배선이 포함되어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사업승인(최종변경)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견본주택 내·외부 조경은 전시용으로 실제 시공과 무관합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 표현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도로·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설계 이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상업시설 홍보 모형·영상은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실제 시공 시 조경·시설물·마감재·입면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부, 엘리베이터 훌,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 (공사 중 사업계획승인 변경도서 포함)에 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소화기,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관련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 (필요 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과 전시용 조명, 설비 등은 부속배선·배관을 포함하여 시공·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세대 내 화장실 및 다용도실에 설치된 바닥배수 및 점검구는 실제 배관 설치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보일러 관련 장비 설치에 따라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주요사항

※ 다음의 단위세대 설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공통사항

- 세대의 기준층 천장고는 2.3m입니다.

- 주동 장애인승강기(엘리베이터) 샤프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에 따라 바닥면적(공급면적)에 제외되어 산정되었습니다.
- 같은 전용면적의 단위세대라도 층수, 동수, 형태, 타입에 따라 구조, 주방가구 길이, 드레스룸 크기, 발코니면적 등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내부 벽체(PIT층 포함)의 임의적인 구조변경, 확장은 불가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주민이 져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하층(1층세대 및 필로티 상부세대)세대를 제외한 세대는 화재등 유사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아래층 세대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피난구 설치공간은 물건 적재금지)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니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발코니창호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출입문의 형태, 재질, 열림방향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훌의 기준층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기준과 상이합니다.
- 천정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 및 소방용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 및 소방용 감지기는 견본주택용이며, 본공사는 소방 법규에 맞춰 설치됨)
- 환기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의 온수분배기는 주방 싱크 하부장에 설치되며, 싱크 하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침실, 다용도실등 문 뒤페이지, 현관벽 등 노출된 부위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될 예정됩니다.
- 각실 옵션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 및 스위치, 콘센트의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세대 내 Wifi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며,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등에 명시한 IoT관련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어시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실 옵션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 및 스위치의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용 급수 계량기는 엘리베이터홀 PD 내부에 설치됩니다.
- 세대 내부 일부 골조벽체는 경량벽 또는 조적벽, 경량콘크리트패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화장 세대의 경우 단열조치에 따라 발코니에 벽체가 추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각 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주변은 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위치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이용료(기본요금 포함)가 발생하며, 유지관리에 비용이 발생 됩니다. 설비보증기간 이후 수리비, 관리비 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중간저장조, 집하시설, 기계실, 외부배출설비(102동 전면 지상 차량이용)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른 소음, 쭈기 및 진동이 인접 세대에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지붕, 옥탑부에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배기탑 설치로 인한 소음, 냄새(취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하, 지상층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배출 스테이션 위치와 규격, 사양,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창호가 개폐되는 부분에만 유리난간이 설치되며,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2m 적용됩니다. 유리난간 설치위치는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전기 설비 등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에 따라 지하층 전기실에 중계장치가 설치됩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천장 내부에는 전기·통신·급수·온수·난방 등 설비배관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 박기나 드릴 작업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가스배관·가스밸브·스위치·조명·수전·콘센트·보일러·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는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현관·현관창고·욕조·샤워부스·발코니, 일부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코니, 욕실 천장에는 상부층 배관, 설비, 점검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온도조절기 및 환기 컨트롤 등은 제품의 상향 또는 단종으로 인해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세대 내 확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세대 개별공사 시 조명기구 및 스위치 등 전기관련 부품은 반드시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시행·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된 식탁 예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벽면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위치 및 장소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단위세대 분전함, 단자함은 세대 벽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또는 홈오토메이션)의 기능 및 월패드 디자인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다용도실,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발코니 천장에 설비,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위세대 주방 렌지후드 작동 시 기계 소음 및 배관의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보일러 연도(배기배관)는 연소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입주자가 임의로 분리·조정·변경할 경우 유해가스(일산화탄소 등)가 실내로 누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시공업체 또는 관리주체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li> <li>에어컨 사용 시 실외기실의 그릴창은 반드시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닫힌 상태에서 작동할 경우 통풍 불량으로 인한 냉방성능저하, 과열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li> <li>커튼박스 및 간접조명등박스 규격은 기계, 전기 배관으로 인해 깊이 및 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 손빨래수전 및 세탁기용 수전과 세탁기 근접 배치 시 수전과 세탁기와의 간섭, 충돌, 사용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합니다.</li> </ul>
발코니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li> <li>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결로저감을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li>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다용도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마감(창호,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최하층 세대 제외)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상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발코니의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li> <li>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li> <li>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을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며,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미관상 및 사용상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고, 발코니 확장 세대와 접하는 부위의 단열 성능확보를 위한 발코니 벽면, 상하부 단열재 설치로 인해 바닥 레벨이 높아지고,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으며 창호와 발코니공간이 축소될수 있으며,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미관상 및 사용상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단위세대 및 마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 개폐 방향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li> <li>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기준높이는 2.3m로 시공됩니다.</li> <li>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부 구조 위치 또는 실별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건축허가(사업 계획승인)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가구·패널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li> <li>불박이 가구(신발장·주방가구·욕실장 등) 및 빌트인 가전제품으로 가려지는 벽·바닥·천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레일·조명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타일·상판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무늬·패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동등 이상 사양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모델로 시공되더라도 견본주택과 색상·디자인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li> <li>인조대리석·엔지니어드스톤 등 석재류와 주방 상판은 이음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으며, 변색 방지를 위해 반드시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합니다.</li> <li>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li> <li>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시간 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하며, 자외선·세제·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변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에서 사용성 개선과 과 하자예방을 위해 주방가구, 발코니가구 및 각종 수납공간은 일부 구성과 위치, 세부규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세대 설치 가구내 입주자 소유 가전기기의 수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규 구매는 입주 후 실측 하신 후 구매 하셔야 합니다.</li> <li>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li> <li>욕실장 후면과 욕조 접합 벽·바닥에는 타일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욕실 여닫이 출입문은 본 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세대 내 PVC 도어는 동급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세대 내 욕실 위생도기·수전류·액세서리류(수건걸이·휴지걸이 등)는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욕실거울·수전류·샤워부스·철재류 등은 반드시 중성세제를 사용해야 하며, 철수세미 사용 시 흠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에 있지 않습니다.</li> <li>세대 창문과 인접시설의 창문 배치에 따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수납계획(디자인·크기·도어 수), 우물천장 유무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세대 내 올림공간(우물천장)의 천장고는 상부세대 및 당해층 설비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일부 세대는 인접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아트월 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조명·월패드·설비배관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거실 아트월은 디자인월 마감으로 줄눈채움이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 및 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인테리어 디자인에 따라 일부 면적이 가구·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거실·주방·침실 바닥재는 목재마루로 시공되며, 스팀청소기·물걸레 등 습식청소 시 장시간 수분 노출로 인해 변색·변형·뒤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세대 내 일부 벽체는 석고보드 경량벽체로 시공되므로, 부착물 설치 시 전용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li> <li>주방 상부장은 가스배관·후드 배기관, 상부층 배수관 등의 설치로 인해 깊이와 수납공간이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현관 디딤석 및 주방 상판재 마감은 이음부위가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발코니 및 선큰의 도장·마감재질·색상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재는 본공사 시 분절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음면의 위치가 다소 변경되고 추가될 수 있습니다</li> <li>하든도어 주변으로 틈이 발생하고, 각종 출입문 틈에 손끼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옵션 인테리어 벽장재는 줄눈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욕실 배수구는 형태나 시공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창호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에 시공된 내/외부 창호의 개폐방향 및 손잡이 디자인은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창호의 설치 위치 및 크기는 외관 디자인에 따라 실시공시 카탈로그, 분양홍보물(모형, CG)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사양은 인·허가 진행, 외부입면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각 실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위치, 방향 및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세대 내 실외기실 문과 실외기실 외부 루바창의 형태, 규격, 재질, 사양, 손잡이, 방충망 개폐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세대 내 창호의 개폐방향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102동 1호 라인 세대(84B)의 침실1(안방)의 측면창은 소방관진입창 표식이 설치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창의 규격과 설치높이, 유리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li> <li>103동 2호 라인 세대(84B)의 알파룸 창호의 조망은 전면의 벽체로 인해 시야가 제한됩니다.</li> <li>문 개폐시 충격으로 인하여 흔들림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li> </ul>
발코니 및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는 비상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시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닙니다.</li> <li>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와 실외기 설치, 천정에는 환기장치 장비 및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li> <li>전열교환기의 위치는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에 따라 층별 교차 시공됩니다.</li> <li>최하층(1층세대 및 필로티, PIT 상부세대)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일부 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대체하는 피난기구로 '완강기'가 발코니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li> <li>실외기공간과 하향식 피난구 사이에 구획된 불연재료 점검구의 형태 및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점검구를 통해 실외기 진동과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li> <li>겨울철에 실외기 그릴창과 실외기공간 점검구가 개방될 경우 동파, 동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동절기 단한상태 유지 및 보온 조치를 하는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발코니 벽부 선반은 규격과 마감, 사양,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b>스마트 홈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일하이빌 전용 플랫폼은 스마트 단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며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마트폰 단말기가 인터넷(통신사, WIFI)에 연결이 필수 조건이고, 아파트 단지의 스마트홈 구축사항 및 외부 네트워크망 연결 여부에 따라 제어 및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동일하이빌 전용 플랫폼은 운영사 (HT beyond)의 정책에 따라 성능개선, 인터페이스 업데이트 등의 사유로 기능의 추가 및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으며, 분양 시 홍보된 UI/UX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동일하이빌 전용 플랫폼의 일부 기능에 대하여 운영사 사업정책에 따라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이용 조건은 운영사의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동일하이빌 전용 플랫폼은 입주자정일 기준 3년간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후에는 사용자(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운영사(HT beyond)간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서비스를 지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li> </ul>
<b>근린생활 시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 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향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의 조업을 위한 차량 등이 단지 주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li> <li>분양홍보관 게시물과 배포된 홍보, 판촉물에 기재된 근린생활시설(상가) 업종, 업태, 영업규모 등은 예시이며 확정사항이 아닙니다. 건축허가 조건, 관련 법규, 입점자(임차인)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특정 업종의 입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하수가 사용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분양계약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1층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호실은 전용 지하주차장과의 보행 동선이 외부로 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동에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의 냉,난방, 배기, 환기설비는 각 호실별 상가분양자가 설치하는것이며, 냉,난방, 배기, 환기설비 위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진동,소음,냄새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 1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시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외**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개별난방 방식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원, VAT포함)

항목	공종	금 액(원)	비고	항목	공종	금 액(원)	비고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18,194,614,893		건축	타일공사	2,513,391,429	
	기간이자	1,966,146,415			돌공사	3,770,087,143	
	필요적 경비	1,023,086,196			도장공사	1,256,695,714	
	그 밖의 비용	15,538,741,221			도배공사	1,005,356,572	
	계	36,722,588,725			수장공사	2,513,391,429	
토목	토공사	1,508,034,857		기계 설비	주방용구공사	2,262,052,286	
	흙막이공사	2,513,391,429			그 밖의 건축공사	3,279,975,815	
	비탈면보호공사	37,700,871			급수설비공사	879,687,000	
	옹벽공사	-			급탕설비공사	879,687,000	
	석축공사	87,968,700			오수, 배수설비공사	1,885,043,572	
	우수, 오수공사	314,173,929			위생기구설비공사	1,885,043,572	
	공동구공사	-			난방설비공사	1,759,374,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25,669,571			가스설비공사	1,759,374,000	
	도로포장공사	377,008,714			자동제어설비공사	1,508,034,857	
	교통안전시설물공사	125,669,571			특수설비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62,834,786			공조설비공사	1,382,365,286	
	조경공사	1,885,043,572			전기설비공사	4,147,095,858	
	부대시설공사	2,400,288,815			정보통신공사	1,256,695,714	
	공통가설공사	2,324,887,072			소방설비공사	1,885,043,572	
공사비	가시설물공사	1,885,043,572			승강기공사	1,256,695,714	
	지정 및 기초공사	1,759,374,000		그밖의 공종	일반관리비	6,283,478,572	
	철골공사	-			이윤	6,283,478,572	
	철근콘크리트공사	31,794,401,575			계	120,140,110,298	
	용접공사	-			설계비	2,513,391,429	
	조작공사	2,136,382,714			감리비	3,016,069,715	
	미장공사	2,513,391,429		간접비	일반분양시설경비	-	
	단열공사	1,885,043,572			분담금 및 부담금	-	
	방수, 방습공사	2,513,391,429			보상비	-	
	목공사	1,256,695,714			기타 사업비성 경비	-	
건축	가구공사	2,513,391,429			계	5,529,461,143	
	금속공사	1,759,374,000		부대비	그 밖의 비용	21,855,953,970	
	지붕 및 흙통공사	1,721,673,129			합계	184,248,114,136	
	창호공사	3,217,141,029					
	유리공사	3,770,087,143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가산비 공시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원, VAT포함)

항목	금액(원)	항목	금액(원)
----	-------	----	-------

택지비 가산항목	택지비 가산비 계	18,527,973,832	건축비 가산항목	건축비 가산비 계	21,855,953,970
	법정 택지이자	1,966,146,415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1,044,861,060
	취득세	727,784,596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4,536,003,005
	농어촌특별세	20,070,616		초고속통신특등급 설비공사	1,481,012,223
	교육세(취득세)	72,778,460		에어컨냉매배관 설비공사	2,759,749,426
	재산세	101,889,843		기계환경 설비공사	2,706,322,394
	교육세(취득세)	20,377,968		음식물쓰레기이송설비	2,940,063,784
	재산세도시지역분	71,322,890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1,139,698,735
	등기수수료	8,545,567		태양광 설비	680,967,000
	인자세	316,25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	152,595,468
말뚝박기 공사비		4,195,922,351	건축특화	외관특화공사비	2,513,452,288
흙막이 및 차수벽 공사비		11,342,818,870		법정초과 조경시설 설치비	1,297,973,306
				분양보증수수료	603,255,283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산출근거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산출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24,590,200,000원	제01282025-101-0005400호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체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체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체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체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체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체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체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체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체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체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체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 (1566-9009)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디아이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라인엔지니어링	(주)라인엔지니어링	(주)라인엔지니어링
감리금액	1,887,479,000원	528,267,180원	396,000,000원	66,000,000원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	시공사
상 호	비에이치아이건설(주)	(주)한국토지신탁	(주)동일토건
주 소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성내남길 186, 207호, 208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106, 402호 (두정동, 엠프라자 4층)
등록번호	194311-0018762	110111-1258220	110111-0629026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등록업자 : (주)한국토지신탁

※ 등록업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10

※ 사업방식 : 분양형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분양대금 완납시 개별등기

※ 사업계획승인 : 2025.09.12

## ■ 분양형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1. 본 사업은 시행자인 비에이치아이건설(주)이 수탁자인 (주)한국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분양형 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비에이치아이건설(주)이고, (주)한국토지신탁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2.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계약이 종료, 해지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주)한국토지신탁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오시공, 미시공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의무, 공법상 의무 및 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비에이치아이건설(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공급대금은 본문 기재 (주)한국토지신탁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로만 입금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입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후 하자 불문, 오 시공·미 시공 포함한 일체의 하자보수책임)은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자인 비에이치아이건설(주) 및 시공회사인 (주)동일토건이 부담한다.
5. 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이 김천혁신 동일하이빌 파크레인의 토지비, 공사비 등 PF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6. 분양계약 목적물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주)한국토지신탁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주)한국토지신탁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주)한국토지신탁에게 협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공회사에게, 분양대금 반환 책임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비애이치아이건설(주)에게 있다.
8. (주)한국토지신탁은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분양계약 해제를 구할 수 없다.
9. 상기 분양형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은 본 모집공고의 다른 사항보다 우선한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s://김천혁신동일하이빌파크레인.com>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북도 김천시 울곡동 1128

■ 분 양 문 의 : 1660-116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본 아파트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